##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안

제출연월일 : 2007. 10. 29.

제 출 자: 대전광역시장

#### 1. 제안이유

258

의 알

증가하는 관내 거주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원활한 지역 사회 통합을 도모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가. 거주외국인은 대전광역시 시민과 동일하게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3조).

나. 거주외국인등에 대한 지원을 정함(안 제5조).

다. 대전광역시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 구성, 기능 등에 대하여 정함(안 제6조 내지 12조).

라.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을 정함(안 제13조).

마.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의 주간에 대하여 정함(안 제14조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의: 해당없음

라. 기 타

(1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 • 폐지 등 없음

(2) 입법예고 : 2007. 9. 14. ~ 10. 4. / 접수의견 23건(반영 4, 미반영 19 / 별첨)

###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거주외국인 등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1. "거주외국인"이라 함은 대전광역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.
  - 2. "외국인 가정"이라 함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·입양· 혈연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를 말한다.
  - 3. "거주외국인등"이라 함은 거주외국인, 외국인 가정 및 시에 거주하는 재한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를 말한다.
  - 4. "외국인 지원단체"라 함은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이 또는 단체를 말한다.
- 제3조(거주외국인등의 지위) 거주외국인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대전광역시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,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- 제4조(시장의 책무) ①대전광역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, 거주외국인등이 지역주민과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  - ②시장은 거주외국인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시장은 거주외국인등의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**제5조(지원)** 시장은 거주외국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1.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
- 2. 고충·생활·법률·취업 등 상담
- 3. 응급구호, 보건의료 및 교육 등
- 4. 그 밖에 거주외국인등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6조(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 설치) ①시장은 거주외국인등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  -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③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 - ④투자통상본부장, 자치행정국장,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,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  - 1. 대전광역시의회의원
  - 2. 외국인지원 관련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
  - 3. 거주외국인등 지원단체 대표
  - 4. 그 밖에 외국인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- 제7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.
  - 1. 거주외국인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
  - 2.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
  - 3.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
  - 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8조(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제9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.
  - ②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10조(회의) ①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  -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제11조(수당 등)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「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12조(운영규정)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- 제13조(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)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14조(세계인의 날 기념) ①시장은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 - 1. 기념식, 문화・예술・체육행사
  - 2. 연구발표, 국제교류행사
  - 3. 명예시민증 수여, 유공자·단체(외국인 포함) 격려
  - 4. 그 밖에 외국인 또는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
  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사는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위탁하여 추진 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15조(포상) 시장은 거주외국인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 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법인·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- 제16조(명예시민)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.
- 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관계법령

#### □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

제1조 (목적)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,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·시행에 노력하여야한다.

제19조 (세계인의 날) 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,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한다.

② 세계인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 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.

의견제출자	조례(안)	제출의견	조치내용
- 대전모이세 (강승수) - 대전외국인노동자와 함께 하는 모임(김규복) - 대전이주노동자 연대(서민식) ** 위 3개 단체 공동 제안으로 다음 내용 부터 대전모이세외 2 로 표기	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거 주외국인등의 지역사회 적응 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 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 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.	- 제1조(목적) 이조례는 대전광역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거주하는 이주민 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사회에서 여타한 차별과 불편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생활하며, 지역주민 내 상호이해와 존중을 기 반으로 한 다문화 지역사 회 형성을 위한 지원을 추구하며 지역사회	으로 변경 - 지원대상에 외국노동자, 결혼이민자, 유학생등을 포괄 하기 위하여 "외국인"용어 사용 => 미반영 ※ 이하 이 용어에 대한 각 조의 사항은 같음 ○"권리를 보장하고~추구
- 대전모이세외 2	제2조(정의) 1. "거주외국인"이라 함은 대전광역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.	시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           고 체류하고 있는 대한민	외국인은 등록을 하도록
- 대전 외국인노동자 종합지원센터(김봉구)	- 위와 같음	-"합법적"으로 문구 삭제	○"합법적"문구 삭제 - 위와 같음
- 대전모이세외 2	제2조(정의) 2. " <u>외국인 가정</u> "이라 함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<u>외국인</u> 과 혼인·입양· 혈연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 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 동체를 말한다.	를 두고 있는 <u>대한민국</u> <u>국적을 지니지 않은 자</u> 와	- 다문화 가정 표현은 모호함 <b>=&gt; 미반영</b> ○"외국인"을 "대한민국 국적을 지니지 않은 자"로 수정

의견제출자	조례(안)	제출의견	조치내용
- 대전모이세외 2	제2조(정의) 3. "거주외국인등"이라 함은 거주외국인, 외국인 가정 및 시에 거주하는 재한외국인으 로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를 말한다.	-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한 자를 외국인으로 분류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므로 3항 삭제	-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라고 하더라고 지원 필요시 계속적인 지 원을 위해 거주외국인등 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함 => 미반영
- 대전 외국인노동자 종합지원센터(김봉구)	- 위와 같음	-거주외국인≠국적취득자,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는 외국인이 아님	- 위와 같음
- 대전모이세외 2	제2조(정의) 4. "외국인 지원단체"라 함은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림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	제2조(정의) 4. "이주민 단체"라 함은 이주민의 인권보장을 주 된 목적으로 하여 지원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하려 설림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	○"외국인에 대한 지원" 을"이주민의 인권 보장을 주된 목적…"으로 변경 -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 의미에 포함 => 미반영
- 대전모이세외 2	제3조(거주외국인등의 지위) 거주외국인등은 법령이나 다 른 조례등에서 제한하고 있 지 않는 한 대전광역시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, 시 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.	제3조(이주민의 지위)이주 민은 법령을 제외한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대전광 역시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 할 수 있고,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 다.	○ 법령을 제외한 다른 조례에 우선 적용 - 타조례에 우선하여 적 용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치 못함 => 미반영
- 대전모이세외 2	제4조(시장의 책무) ①대전광역시장(이하"시장" 이라 한다.)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거주외국인등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	①대전광역시장(이하"시 장"이라 한다.)은 시에 거 주하는 이주민이 지역사 회에서 <u>불편부당한 차별</u> 을 받지 않도록 하고, 지	-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여건 형성에
- 대전 외국인노동자 종합지원센터(김봉구)	제4조(시장의 책무) ①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 야 한다.	- 지원시책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 명시	=> 반영

의견제출자	조례(안)	제출의견	조치내용
- 대전 외국인노동자 종합지원센터(김봉구)	국인등에게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1. 한국어 및 기초생활교육 2. 고충·생활·법률·취업등 상담 3. 생활펴의 제공 및 우급	- 다문화교육, 취업, 직업 교육, 토론회, 학술대회 포함 - 보건의료 지원 추가 - 거주외국인 가정, 자녀 까지 포함 - 전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 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는 조항 신설	○다문화교육, 취업, 직업 교육, 외국인 가정, 자녀, 토론회, 학술대회까지 포함 - 외국인 가정, 자녀까지 포함은 이미 거주외국인등 에 포함되어 있으며 각호 에 나열하지 않은 사항은 5호에 포함 => 미반영 ○보건의료 지원 추가 - 보건의료 => 반영 ○각호와 관련된 사업수행 예산편성 의무 조항 신설 - 재정적인 지원은 시 예 산의 범위 안에서 가능함 => 미반영
- 대전모이세외 2	- 위와 같음	- 보건의료 항목 신설	- 위와 같음
- 대전모이세외 2	제6조(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 원회)	- 이주민공동체 대표 추가	- 3호 거주외국인등 지원 단체 대표에 포함 => 미반영
- 대전모이세외 2	제7조(기능) 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- 위원 1/5 이상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추가	
- 대전 외국인노동자 종합지원센터(김봉구)	제7조(기능)	- 거주외국인 가정, 자녀, 외국인 관련 민간단체까지 지원 포함	- 거주외국인 가정, 자녀는 1항에 포함되며, 외국인 관련 민간단체의 사업내용 이 거주외국인 지원을 목 적으로 하는 것으로 1항의 내용과 같음 => 미반영
- 대전 외국인노동자 종합지원센터(김봉구)	제8조(임기)	- 연임 기한 한정 삭제	- 장단은 있으나 연임기한을 제한하지 않으면 전문성과 적극성 결여시 새로운 의견을 받을 수 없게될 수 있음 => 미반영
- 대전 외국인노동자 종합지원센터(김봉구)	제10조(회의)	- 재적 과반수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 추가 - 정기회의는 년 1회 이상실시 조항 신설	과반수 찬성의결 조항추가 => 반영

의견제출자	조례(안)	제출의견	조치내용
- 대전모이세외 2	제10조(회의)	- 회의를 정기회와 임시회 로 구분 - 위원 1/5 이상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회의소 집 가능 조항 신설	-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시항은 제12조(운영규정)에 의하여 정함 => 미반영
- 대전 외국인노동자 종합지원센터(김봉구)	<b>'</b>	- 업무의 위탁 조항 신설 (업무의 일부, 전부 위탁 할 수 있고 운영비를 지 원할 수 있고, 지도점검 을 할 수 있다.)	- 『대전광역시 사무의 민 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 례』규정이 있으므로 별도 조항 불필요 => 미반영
- 대전 외국인노동자 종합지원센터(김봉구)	제14조(세계인의 날)	- 궂이 1항만 지원 한다 기 보다 위 조항 전체를 지원할 수 있다 로 수정	- 1항이란 1호~4호를 포함 => 미반영
- 대전모이세외 2	제14조(세계인의 날)	- 민간단체를 이주민 단 체로 수정	- 외국인 지원단체로 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무리가 있고 표준조례안의 범주를 벗어남 => 미반영

##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07년 12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

### I. 심 사 경 과

**1.**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년 10월 29일 대전광역시장

2. 회 부 일 자 : 2007년 10월 29일

3. 상 정 일 자: 제17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7차 산업건설위원회(2007. 12. 5)상정,

심사, 원안가결

## Ⅱ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투자통상본부장 김 창 환)

### 1. 제안이유

증가하는 관내 거주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원활한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가. 거주외국인은 대전광역시 시민과 동일하게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3조).

- 나. 거주외국인등에 대한 지원을 정함(안 제5조).
- 다. 대전광역시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 구성, 기능 등에 대하여 정함(안 제6조 내지 12조).
- 라.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을 정함(안 제13조).
- 마.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의 주간에 대하여 정함(안 제14조).

## Ⅲ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장예순)

○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,

### 조례안 세부내용을 보면,

- 조례제명을 「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안」으로 정하고, 안 제3조에서는 거주외국인등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음.
- 안 제4조 내지 안 제5조에서는 거주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에 관한 범위를 정하였으며,
- 안 제6조에서는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각종 지원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### 이상과 같이 조례안 검토결과,

- 본 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거주외국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원활한 지역사회의 통합을 이루는 한편 거주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실질적인 지원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의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,
- 안 제2조에서 "거주외국인"을 규정함에 있어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있어, 90일 미만의 단기 체류자나 불법 체류자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,
-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각종 시책구상이나 정책수립시 외국인 관련 지원단체나 거주외국인을 직접 참여시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Ⅳ. 질의 · 답변요지 : 생 략

V. **토 론 요 지**:생 략

WI. **심 사 결 과** : 원안가결

VII. **기타 필요한 사항** : 없 음